

2021년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7.(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36건(안전번호 제2021-136027호~13702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136027호~136048호(순번 1번~22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영상물(방송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136033호, 136034호, 136042호, 136043호(순번 7번, 8번, 16번, 17번)는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안전번호 136049호~136051호(순번 23번~2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136052호~136061호(순번 26번~35번)는 팬카페 사이트의 이용자가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저작인격권자가 복제·전송을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136062호(순번 36번)는 기업 홈페이지에서 배경음악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요청 URL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홈페이지 전체가 폐쇄되어 영업의 자유 등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유선으로 이루어진 계도조치 후 해당 저작물이 삭제되어 해당 부분의 시정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136063호~137029호(순번 37번~100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2,27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3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003번 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2번은 실명(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과 ○○○ 블로그·카페에서 방송 '○○○ ○ ○○○ ○○', '○○○ ○○○○ ○○○' 등과 애니메이션(영화) '○○○ ○ ○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43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 ○○○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9번, 12번, 19번 게시물의 경우 2021. 10. 15.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순번 7번, 8번, 16번, 17번(5건)의 게시물은 2021. 10. 15.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번~6번, 순번 9번~15번, 순번 18번~2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7번, 8번, 16번, 17번

의 경우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단,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순번 1번~22번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 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합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3번~25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과 출판물 ‘○○○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순번 2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

때 중이며, 제1화~제254화 완결판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3번~2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25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

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6번~35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가 '◇◇◇' 팬카페를 통하여 이용자가 '○○○'의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총 10건). 음원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및 mp3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복제·전송하고 있음.

(순번 2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의 음원 일부를 각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하고 있음. 이 중 일부 음원은 국내외 유통사를 비롯한 합법적인 유통이 일체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음원은 합법시장에서의 이용이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아닌 자가 권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임은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파일을 게시물에 첨부 형태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재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오로지 음악을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다운로드 형태를 해당 게시물 내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게시물을 벗어나더라도 음악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전송형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저작인격권자 측이 이러한 이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6번~3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음반제작자 측이 불법복제물 게시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한 사정은 없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렇게 불만한 사정은 없어 보임.
- A 위원: 시정권고를 하면 팬클럽 운영자가 아닌 플랫폼서비스제공자에게로 시정권고서가 가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네이버 카페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 네이버에 시정권고서를 발송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저작인격권자가 복제·전송을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35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6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저작물과 무관한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1건). 음원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으로 복제·전송하고 있음. (순번 3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대상 게시물은 동시에 1곡 내지 2곡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곡은 매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임. 2021. 10. 5. 사무처와의 통화에서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원 등을 직접 등록하고 있으며, 해당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음악저작물을 권한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은 확인됨. 다만 저작물시장과 관계없는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단순히 배경음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특정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 심의요청 URL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홈페이지 전체가 폐쇄되어 영업의 자유 등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사무처와의 통화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시정의사를 확인하고 심의일 현재 실제 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특정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특정한 음악을 듣기 위하여 검색 등을 통해서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 A 위원: 해당 업체 직원들은 자사 홈페이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곡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지?
- C 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직원 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큰 규모는 아니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A, B 위원: OSP인 기업 측에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게 된다면 경고 조치만으로도 홈페이지 전체가 폐쇄되는 등의 영향이 있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 아닌, 경고만으로는 그러하지는 않음.
- A, C 위원: 홈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해당 음악만 내려달라는 시정권고가 가능하지 않은지? 예를 들어,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음악만을 URL 단위로 따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음악을 URL 단위로 따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음악만을 대상으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불가함.
- A 위원: 하지만 경고의 시정권고의 경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불법복제물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면 해당 업체 측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업체의 경우 보호원을 통해 유선으로 이루어진 계도조치를 통해 이미 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고 조치가 필요할지 의문임.
- C 위원: 이미 시정이 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A 위원: 기존의 안전들에서도 이미 삭제된 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해왔듯이,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이미 불법복제물이 삭제 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기존의 안전들은 그 자체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기 위한 데드 카피(dead copy) 안전들로서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삭제 경위 등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의 전송만을 위한 건이 아니라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이런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 저작권 관련 안내 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실제로 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결로 의견을 드려왔음.
- A 위원: 보호원이 구두로라도 해당 업체 측에 불법복제물 이용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도한 후에 시정이 된 것이라면 시정권고 부결 의견이 납득이 됨.
- B 위원: 해당 업체의 담당자가 이해하고 일단 삭제조치를 했더라도, 문서로 된 경고의 시정권고라도 전달하는 것이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일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만일 저작권법에 따른 경고의 시정권고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한 건 중 저작권 침해 여부에 애매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와 별도로 보호원에서 문서를 통해 안내 또는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오진해 전문위원: 만일 문서의 형태로 안내가 될 경우 또 다른 행정력의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점에 대하여 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보겠음.
- B 위원: 심의요청 URL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홈페이지 전체가 폐쇄되어 영업의 자유 등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보호원을 통해 유선으로 이루어진 계도조치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자의 저작권법 준수 안내를 위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소규모 기업의 홈페이지이므로 배경음악이 매일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호원의 안내 전화를 통하여 이미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의 시정권고 보다는 추후 저작권법 위반 우려를 통지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위원 3인, 부결 위원 1인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순번 36번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7번~100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

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만화 '던전밥'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82번은 웹하드에서 만화 '던전밥'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71화를 제공하고 있음. 쿠키 료코가 2014년 2월부터 연재 중인 일본 만화임. 네이버 시리즈앱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프리 가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28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프리 가이'를 187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1시간 54분 58초를 제공하고 있음.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서 2021. 8. 11. 공개한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앱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오징어 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43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오징어 게임'을 400개시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제1화~제9화를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9. 7. 공개한 드라마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37번~100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37번~100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7번~100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36033호, 136034호, 136042호, 136043호, 136062호(순번 7번, 8번, 16번, 17번, 36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36027호~136032호, 136035호~136041호, 136044호~제2021-136061호, 136063호~137029호(순번 1번~6번, 9번~15번, 18번~35번, 37번~100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14.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